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 민병주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으로

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

15층 층수제한이 삭제됨에 따라

조례로 위임된 층수제한 규정을 보완·개선하여

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한편,

○ 토지수용권이 없는 경우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

이주 및 철거 시 보상 갈등 초래 및 사업 지연이 우려되므로

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할 경우에는

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
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